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안 번호	2025
----------	------

제출년월일 : 2010.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 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안산시 지역현황·건강수준·주민의 관심 등의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

□ 주요 골자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노인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와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 등 질병 구조의 변화,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 지방자치 행정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인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함.
- 이에, 역학적 근거와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우리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지역건강 현황분석

- 안산시민의 건강 실태를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조사, 우리시의 중요한 건강문제,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자원, 건강 환경 자료 등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분석 진단함.

3. 중점 사업계획

- 안산시민의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의 적절한 배분을 근간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적인 목표와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함.
 - 금연사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암 관리사업

4. 개별사업 계획

- 중점과제 이외의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사업(15개 사업 이상)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세부 해결전략을 수립함.
-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중점사업대체),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중점사업대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중점사업대체),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의약무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외국인 건강관리사업(안산 특수사업)등이 있음.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중점사업 및 개별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보건기관 자원에 대한 확충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2011년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소와 민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타 지역 대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정책 개발을 통한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내·외국인의 건강보호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별도 제출

□ 관계 법령 : 별첨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참고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 공람 : 2010.9.15 ~ 9.28(2주간)
 - 주민의견 없음

지역보건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

태동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1999.8.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